

Fi 쌈짓돈Ⅲ 통장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소법"이라 한다)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**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**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**.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- ◆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**.

구 분	내 용												
상품명	• Fi 쌈짓돈Ⅲ 통장												
가입대상	• 개인 (1인 1계좌)												
가입금액 및 기간	• 제한없음												
가입채널	• 영업점 - 계좌개설 시 개설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• 모바일뱅킹 (다올디지털뱅크 Fi(파이), SB톡톡+) - 최근 1개월 내 요구불예금 개설이력이 없는 등 비대면계좌개설을 위한 조건충족 필수	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매월 이자지급 -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금에 가산 - 최초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며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리 적용	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		
이자율(연,세전) (26.06.26 현재)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 적용 • 본 상품은 변동금리이므로, 이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이 즉시 적용됩니다. 또한 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. •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리가 적용되며, 각 잔액구간별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. <table><tr><th>금액구간</th><th>기본금리</th></tr><tr><td>1백만원 이하</td><td>5.00%</td></tr><tr><td>5백만원 이하</td><td>3.60%</td></tr><tr><td>3천만원 이하</td><td>3.50%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3.40%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분</td><td>1.00%</td></tr></table> • 인터넷/모바일뱅킹으로 계좌조회시 최대이율만 조회됩니다. • 금액구간 및 금리는 시장상황 및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	금액구간	기본금리	1백만원 이하	5.00%	5백만원 이하	3.60%	3천만원 이하	3.50%	5천만원 이하	3.40%	5천만원 초과분	1.00%
금액구간	기본금리												
1백만원 이하	5.00%												
5백만원 이하	3.60%												
3천만원 이하	3.50%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3.40%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분	1.00%												
원천징수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(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)												

구 분	내 용
제한사항	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불가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, 출금,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•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 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
위법계약 해지권	• 금융회사가 금소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•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,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자료열람요구권	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•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•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휴면예금 및 출연	•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•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거래중지	• 거래중지계좌 편입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 - 예금잔액이 10,000원 미만이고,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- 예금잔액이 10,000원 이상 50,000원 미만이고,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- 예금잔액이 50,000원 이상 100,000원 미만이고,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
연계·제휴 서비스	☒ 해당사항 없음 ☐ 해당사항 있음

[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]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44-67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daol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(주)다올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**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**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**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년 월 일 예금주: (서명/인) 대리인: (서명/인)